

의안번호	2200470
의 퇴 인	김정호의원
회 답 일	2024. 7. 10.
추계번호	24B0840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수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2억 4,400만원, 2029년 330억 8,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273억 8,600만원 (연평균 254억 7,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 비) 13억 1,100만원 (연평균 2억 6,200만원)
 - (지방비) 1,260억 7,500만원 (연평균 252억 1,500원)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	70	—	—	—	—	70	14
	농지전수조사위원회 (안 제6조)	17	17	17	17	17	84	17
	시범사업의 실시 (안 제7조)	1,157	—	—	—	—	1,157	231
지방비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 등 (안 제5조제3항), 농지전수조사의 대상 (안 제9조), 농지조사원의 임명·위 촉 등(안 제10조)	—	30,002	30,989	32,016	33,067	126,075	25,215
추가재정소요		1,244	30,019	31,006	32,033	33,084	127,386	25,477
	－ 국비	1,244	17	17	17	17	1,311	262
	－ 지방비	—	30,002	30,989	32,016	33,067	126,075	25,215

주: 시범사업('25년) 이후 4년('26~29년)간 전국 농지를 균분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지전수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1.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3. 농지전수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 5. 농지전수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농지전수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제1항(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 등)	<u>시장·군수·구청장</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기본계획에 따른 <u>연도별 시행계획</u> 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5조제3항(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 등)	농지전수조사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 함(제3항)	
4	안 제6조(농지전수조사위원회)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u>농지전수조사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u>시범사업</u> 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8조(책임실행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조사사업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실행기관(이하 “실행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5조제4항(농지전수조사사업의 책임실행기관 위탁 및 지원경비)	<u>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8조에 따른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u> (제4항)	
7	안 제9조(농지전수조사의 대상)	<u>농지전수조사사업은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함</u> (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0조(농지조사원의 임명·위촉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농지조사원</u>(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함.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제1항). 1.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함), 구, 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함) 단위 담당 공무원 2. 조사대상 농지가 속한 시·구·읍·면의 주민 3.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그 밖에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조사원이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u>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u>(제2항)	의무·재량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2	안 제5조제1항(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 등)	—	• 미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3, 7, 8	안 제5조제3항(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 등) 안 제9조 (농지전수조사의 대상) 안 제10조(농지조사원의 임명·위촉 등)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 농지전수조사 사업 비용 (전액 지방비) * 농지조사원 인건비 등
4	안 제6조 (농지전수조사위원회)	○	• 유사사례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내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5	안 제7조 (시범사업의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 전체 농지의 1%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6	안 제8조 (책임실행기관의 지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조사사업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전수조사사업 외의 책임실행기관 위탁대행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위탁대행경비는 책임실행기관이 지정된 이후 해당 기관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 및 적정 인건비 등을 산출할 수 있고, 책임실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내역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5조제4항(농지전수조사사업의 책임실행기관 위탁 및 지원경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 및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효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이때 제정안 부칙 제2조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은 2025년에, 농지전수조사는 2026~2029년까지 전체 농지 필지를 균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및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효율

(2024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명목임금상승률(%)	2.5	3.4	3.2	3.2	3.2	3.2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효율	11.124	11.234	11.330	11.425	11.519	11.614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농지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필지 수는 2023년 기준, 약 1,537만필지(농지통계(토지대장 기준))

[표 2] 농지통계(토지대장 기준)

(2023년 기준)

지역	지목						총 필지수 (필지)	총 면적 (ha)
	전		답		과			
	필지수 (건)	면적(ha)	필지수 (건)	면적(ha)	필지수 (건)	면적(ha)		
합계	7,186,891	747,332.98	7,891,528	1,093,442.20	290,208	60,520.42	15,368,627	1,901,295.60
서울특별시	15,138	904.95	9,850	765.81	242	25.43	25,230	1,696.19
부산광역시	33,562	2,020.73	66,924	6,558.46	968	203.58	101,454	8,782.77
대구광역시	86,989	7,339.71	126,318	11,119.72	8,731	1,248.29	222,038	19,707.72
인천광역시	94,918	7,734.61	85,372	15,360.04	1,143	167.81	181,433	23,262.46
광주광역시	39,969	3,110.69	62,951	8,054.50	238	52.99	103,158	11,218.18
대전광역시	29,114	2,653.93	26,119	2,763.74	1,533	218.46	56,766	5,636.13
울산광역시	50,981	3,164.20	93,763	8,897.15	7,046	1,193.94	151,790	13,255.29
세종특별자치시	37,297	3,597.82	42,825	5,900.84	4,274	652.96	84,396	10,151.62
경기도	842,011	86,161.17	871,529	117,388.79	11,184	2,163.28	1,724,724	205,713.24
충청북도	529,258	63,377.81	452,019	59,808.85	26,592	5,026.49	1,007,869	128,213.15
충청남도	766,022	74,435.90	922,840	165,942.53	23,410	5,046.45	1,712,272	245,424.88
전라남도	1,169,978	114,885.08	1,349,069	201,802.02	15,659	4,007.89	2,534,706	320,694.99
경상북도	1,101,666	119,410.17	1,404,097	166,239.83	82,871	15,237.58	2,588,634	300,887.58
경상남도	801,143	58,673.21	1,141,194	121,388.85	26,229	6,999.70	1,968,566	187,061.76
제주특별자치도	188,768	35,172.70	8,776	617.74	70,129	15,911.89	267,673	51,702.33
강원특별자치도	686,863	102,099.43	371,806	53,309.58	5,839	1,043.23	1,064,508	156,452.24
전북특별자치도	713,214	62,590.87	856,076	147,523.75	4,120	1,320.45	1,573,410	211,435.07

자료: 농지공간포털(국토교통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제공)

<<https://njy.mafra.go.kr/njy/main/statistics/njyStats02.do>>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지상시관리조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중
- (농지상시관리조사) 농지 취득·소유·이용·전용 현황을 상시조사·분석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상시 추진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소속 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 ※ [참고자료] 농지조사 현황 참고
- 제정안은 전국의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 즉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5조제3항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²⁾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항목

1. 기본항목	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등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항목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취득 목적 등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
3. 이용항목	경작자명, 자경 여부, 재배품목 등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4. 보전항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현황 등 농지 보전에 관한 사항
5. 정책항목	공익직접지불금 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농지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자료: 안 제9조제2항에서 발췌·정리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7,000만원으로 가정
- 이때,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추계 첫해인 2025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2) 안 제5조(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 등) ① ~ ② (생략)

③ 농지전수조사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표 4]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용역과제명	공고금액
2020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화 방안	40
2021	농지이용행위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	70
2022	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방안 연구	100
평균		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공고사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농지전수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비용	70	—	—	—	—	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농지전수조사위원회(안 제6조)

-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농지전수조사위원회는 2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민간위원(농업인(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등) 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관리위원회³⁾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14명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을 참고하여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

3)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설치 근거: 「농지법」 제37조의3, ('21.8.17.)
- 구성일: 2022. 5. 18.
- 설치 목적: 농지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 위원수: 총 20명(공무원 6명, 민간위원 14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4.5.)

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8,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농지전수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4	14	14	14	14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사례금 단가(C, 백만원/명·회)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17	17	17	17	17	84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7조)

□ 농지전수조사 사업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함

○ (시범사업 필지) 약 153,687필지

－ 2023년 기준 전체 농지 필지(약 1,537만필지) 수의 1% 규모

○ (기간) 2025년 단년도

○ (농지조사원 필요인원) 약 40명

[표 7] 시범사업에 필요한 농지조사원 수 산출

전국 농지필지 (A, 필지)	시범사업 조사 필지 ¹⁾ (B=A×1%, 필지)	1일 1명당 조사가능 필지 ²⁾ (C, 필지)	연 근무일 ³⁾ (D, 일)	연간 1명당 조사 필지 (E=C×D, 필지/명)	필요인원 (F=B/E, 명)
15,368,627	153,687	16	246	3,936	40

주: 1) 시범사업은 총 필지의 1% 규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2) 농지조사원 1명당 조사가능한 필지는 1시간에 2필지이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3) 1인당 연간 근무일 246일 = 365일(1년) - 119일(연간 공휴일)로 가정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5) 1인당 연간 근무일 246일 = 365일(1년) - 119일(연간 공휴일)

- (1인당 인건비) 1인당 25백만원('24년 기준)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조사원채용 경비 예산 준용) 2024년 기준 최저임금(9,860원), 월 209시간 기준, 12개월
 - 이때, 1인당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1인당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적용
- (운영비) 인건비의 5%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운영비 준용(농림축산식품부)

□ 추계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수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첫해에 12억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농지전수조사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명, 백만원/명,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조사원 수(A)	40	—	—	—	—	—
	1인당 인건비(B)	26	—	—	—	—	—
	인건비(C=A×B)	1,023	—	—	—	—	1,023
	기관부담금(D)	134	—	—	—	—	134
	소계(E=C+D)	1,157	—	—	—	—	1,157
운영비(F=C×5%)		51	—	—	—	—	51
추가재정소요(G=E+F)		1,208	—	—	—	—	1,20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 등(안 제5조제3항), 농지전수조사의 대상(안 제9조), 농지조사원의 임명·위촉 등(안 제10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농지조사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전액 지방비)가 발생함

- 농지전수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지조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한

- 연간 공휴일 약 119일: 토·일요일 104일(52주×2일),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4일, 신정(1.1.) 1일, 석탄일 및 성탄절 2일, 어린이날 및 현충일 2일. 단,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음(「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함

- (기간) 2026~2029년 (4년간)
 - 시범사업(2025년) 이후 4년간 전국 대상 필지를 균분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전수조사 대상 필지) 연간 약 384만필지
 - 전국 농지 약 1,537만필지(2023년 기준)를 4년(2026~2029년)간 균분
- (농지조사원 필요인원) 연간 약 977명

[표 9] 농지전수조사에 필요한 농지조사원 수 산출

전국 농지필지 (A, 필지)	연간 조사 필지 ($B=A \div 4$ 년, 필지) ¹⁾	1일 1명당 조사가능 필지 수 ²⁾ (C, 필지)	연 근무일 ³⁾ (D, 일)	연간 1명당 조사 필지 ($E=C \times D$, 필지/명)	필요인원 ($F=B/E$, 명)
15,368,627	3,842,157	16	246	3,936	977

주: 1) 전국 농지필지를 4년간 균분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

2) 농지조사원 1명당 조사가능한 필지는 1시간에 2필지이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3) 1인당 연간 근무일 246일 = 365일(1년) - 119일(연간 공휴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인당 인건비/ 기관부담금/ 운영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가정

□ 추계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260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농지전수조사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명, 백만원/명,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조사원 수(A)	—	977	977	977	977	—
	1인당 인건비(B)	—	26	27	28	29	—
	인건비($C=A \times B$)	—	25,791	26,618	27,477	28,356	108,241
	기관부담금(D)	—	2,922	3,041	3,165	3,293	12,421
	소계($E=C+D$)	—	28,713	29,659	30,642	31,649	120,663
운영비($F=E \times 5\%$)		—	1,290	1,331	1,374	1,418	5,412
추가재정소요($G=E+F$) (지방비)		—	30,002	30,989	32,016	33,067	126,075

주: 1.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임

2. 시범사업('25년) 이후 4년('26~'29년)간 전국 농지를 균분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농지전수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대해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투입되는 농지조사원 수 및 수당 단가, 책임실행기관 업무 위탁대행 경비 지원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농지조사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지상시관리조사

- (개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소유·이용·전용 현황을 상시조사·분석하여 체계적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가능 농지를 조사·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강화
- (법적근거) 「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 (조사주기) 매년 상시 추진
- (조사방법)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농어촌공사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직접 수행(본사 및 9개 지역본부)
- (조사주체) 「농지법」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2항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공표 방법) 농지조사 결과를 분석, 분류하여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조사 결과는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활용됨

□ 농지이용실태조사

- (개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 (법적근거)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조사 범위)
- (조사방법)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거주자 농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조사원 채용하여 시행
- (조사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 농지조사 관련 예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1160-354) - 농지상시관리조사	지자체, 대법원, 국토부로부터 농지 자료를 수급해 DB 구축 및 농지 현황 조사 분석	—	3,978	4,028	4,028
농지이용관리지원 (4130-412)		23,274	24,329	27,539	15,091
-농지이용관리지원 (이용현황 조사 및 실태 조사)	농지의 소유·이용실태조사를 위해 지자체 업무 보조인력 채용 경비 지원	18,395	13,535	17,238	15,091
-농지조사 및 DB구축	(구)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의 이용현황 등 현장 조사를 위한 인력 고용 지원	4,879	10,794	10,30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